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보험(무배당)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상품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IBK연금보험 홈페이지(www.ibki.co.kr) 또는 퇴직연금 콜센터(☎1661-4117)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품내용

구 분	내 용		
상품유형	원리금보장형		
가입대상	무배당 IBK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계약자(사용자)		
상품개요	계약자(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된 부담금으로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 동안 적용이율을 확정 적용하는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상품구조	계약자(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납입된 경우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계약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table border="1"> <tr> <td>이율보증기간</td><td>1 / 2 / 3 / 4 / 5 년</td></tr> </table> 납입된 부담금은 단위보험별로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까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리·적립되며,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율보증기간	1 / 2 / 3 / 4 / 5 년
이율보증기간	1 / 2 / 3 / 4 / 5 년		
보험기간	이율보증기간과 동일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하며, 각각 설정된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 동안 확정 적용됩니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적용이율 * 지표금리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또는 지방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은 매월 공시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ibki.co.kr > 퇴직연금공시실 > 사업자공시 > 원리금보장상품현황 > 이율보증형)		
만기 재설정	계약자(사용자)는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이율보증형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가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 설정을 위한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적용이율은 회사가 단위보험을 자동 설정한 날(이하, "재설정된 날"이라고 합니다)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보험(무배당) 이율보증형 상품설명서

구 분	내 용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 보호 및 상품 안정화를 위해 단위보험별로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도해지(상품변경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단위보험 설정시점(재설정된 경우 재설정시점)부터 해지시점까지의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80%」로 전 기간에 걸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때, 중도해지이율 계산시 적용하는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 또는 재설정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합니다. - 단, 다음의 사유(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음 ①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②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③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④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⑤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⑥ 가입자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제도전환하는 경우

2 기타 안내사항(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 관련)

구 분	내 용
예금자 보호여부	비대상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 해지	계약자(사용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컨설턴트나 콜센터(1577-411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i.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구 분	보험회사	외부기관			
상담·민원	전화상담 (☎: 1577-4117)	생명보험협회	콜센터	☎ 02-2262-6565	
			인터넷 상담	https://consumer.insure.or.kr/counselCase/qna/list.do	
분쟁조정	웹모바일 (☞: www.ibki.co.kr)	금융감독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32	
			e-금융 민원센터	https://www.fcsc.kr/	
		한국소비자원	콜센터	☎ 국번없이 1372	

계약자(사용자)가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을 설명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 객 명 : _____ (서명 또는 인)